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4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6월 5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최근 마약류 등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구민들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. 이에 마약류 등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예방교육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2. “약물”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·진단·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약물(이하 “마약류 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,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(이하 "예방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
2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
4.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사업추진)** ①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
2.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
3. 마약류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
4.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·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, 사법기관, 보건관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